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10.14 (수) 16:00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송은섭 의원 외 21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9월 2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미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농업·농촌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귀농인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귀농인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주요 사항(안 제5조)
- 귀농 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안 제8조)
-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과 시설보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- 귀농인 지원 자금의 관리·정산·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-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관한 지원취소와 회수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’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서 충청북도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귀농인 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